

2019학년도

#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왕 신 여 자 고 등 학 교

# 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 1. 목 적

학교 끝난 뒤 학교 밖에서 이루지는 과외 활동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습자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정을 운영해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기회를 넓힌다.

가. 학교의 시설과 지역사회의 자원을 알차게 활용한다.

나.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줄인다.

다. 학부모와 지역사회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 받는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한다.

라. 학교 끝난 뒤,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 나간다.

## 2. 운영 방향

1). (프로그램 개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희망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교과, 교양, 특기적성강좌)을 개설·운영한다.

2). (참여 원칙)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방과후학교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한다.

(단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교육비 중 자유수강권 및 농산어촌지원 대상자는 교육청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3). 학부모에게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한다.

4). (학교운영위원회)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계획(프로그램명, 수강료\*, 수강정원, 개인 또는 업체위탁 등), 강사 선정계획(자격기준, 선정방법, 심사기준 등), 도서와 재료 선정 기준 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학기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신설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추가로 받는다.

\* 수강료는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 등을 의미함.

5). (수강료) 수강료는 프로그램 특성, 예상 수강 인원, (주당)운영횟수 또는 총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학생수에 무조건 비례하여 과도한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한다.

6). (운영 방법)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 및 단체에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하며 학생관리, 홍보, 평가 등은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7). 외부기관 위탁교육 및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운영관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의 공평성, 객관성, 투명성, 효율성을 기한다.

8). 방과후학교 교육 담당자로 선정된 강사는 학습지도계획서를 사전에 제출 한다.

9). 학교 및 지역사회, 학생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0). 방과후학교 질적 향상을 위해 점검, 평가, 환류에 힘쓴다.

11). 회계관리는 합법적인 회계처리를 하여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립한다.

### 3.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 가. 연간 방과후 운영 계획

- 2019년 3월 18일 ~ 2020년 2월 28까지 운영

구 분	운 영 기 간	운영요일	대 상	비 고
1차시	2019년 3월 18일 ~ 2019년 07월 18일	월,화,목	1.2.3학년	
2차시	2019년 7월 22일 ~ 2019년 08월 16일		1.2.3학년	여름방학
3차시	2019년 8월 19일 ~ 2019년 12월 27일	월,화,목	1.2.3학년	
4차시	2020년 1월 02일 ~ 2020년 02월 28일		1.2학년	겨울방학

\*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운영 규정을 수립한다.

#### 나. 세부 실천 내용

사업내용	세부실천사항	목표	시기	대상	비고
기초수요조사 및 분석	·프로그램 수요조사(교사, 학생) ·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 준비(희망 강좌 조사)	1회	2월중	재학생 신입생	가정통신문 신입생OT SNS문자
운영 계획 및 운영 규정 수립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1회	2월중	학운위	
프로그램 개설 확정	·각학년 교과 강좌개설 협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정	1회	3월	학운위	가정통신문 SNS문자
강사선정, 임용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1회	2월-3월중	학운위	
연간 지도 계획 수립	·연간 지도 계획서 작성	매차시	3월	각강좌	
수강 신청 안내 및 수강생 모집	·교사 : 강좌개설 신청서 ·학생 : 수강 희망서	4회	매차 시별	전교생	가정통신문, SNS문자 교사-강좌개설 신청서 학생-방과후학교 수강희망서
과정별 강좌(반)편성	·출석부, 지도계획서 작성	4회	매차 시별	각부서	1,2학기 중 하.동계방학 중
정보 공시	·방과후 정보공시	1회	4월	담당교사	학교알리미
수강료 징수	·수익자 부담 (자유수강권, 농산어촌지원금 포함)	4회	1학기(2회) 2학기(2회)	참가 학생	가정통신문 SNS문자
프로그램 운영	·수업 실시	연중	연중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학기별 활동후 설문조사	2회	학기별1회	참가학생	설문조사
프로그램 활동 홍보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홈페이지를 활용	연중	수시	전교생, 학부모	가정통신문 SNS문자

## 4. 세부 추진 계획

### 가. 기초조사 및 분석

- 1) 가정 통신 및 학교 홈페이지, SNS를 통한 학부모, 학생 홍보 및 계도
- 2) 교사들의 강좌 개설 신청서 취합  
학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학교 강좌개설 희망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2월 중)
- 3) 가정통신문 발송-3월 중 (방과후학교 강좌 참가 동의서)
- 4) 방과후학교 참가동의서를 토대로 개설 프로그램 선정 및 당해년도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준비

### 나. 방과후학교 활동 운영 계획 및 운영 규정 수립

- 1)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 따른 맞춤형 수준별 교육 제공한다.
- 2)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계획
- 3)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계획
- 4)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

### 다. 개설 프로그램 결정

- \* 기초조사 결과 수요자의 요구와 학교 실정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전년도에 운영했던 프로그램과 신설 프로그램 중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좌 프로그램 결정한다.
- \*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소질과 적성 및 특기개발을 위한 교양, 특기적성 강좌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 각 프로그램의 구성인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 라. 수강 안내 및 수강생 모집

- 1) 강사와 담당교사의 협의를 통하여 수강생 모집 안내서를 작성한다.
- 2) 수강생 모집 안내서와 참가동의서를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홍보한다.
- 3) 수강 희망자가 많을 경우 수준별로 2개 강좌(반)를 편성,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수강이 확정된 학생에게는 수강료를 징수한다.
- 5) 수강료 납부 : 매 분기별로 수강료를 납부한다.  
(단 저소득층 학생은 자유수강권, 농산어촌 지원금으로 지원한다)

## 5. 강사 모집 및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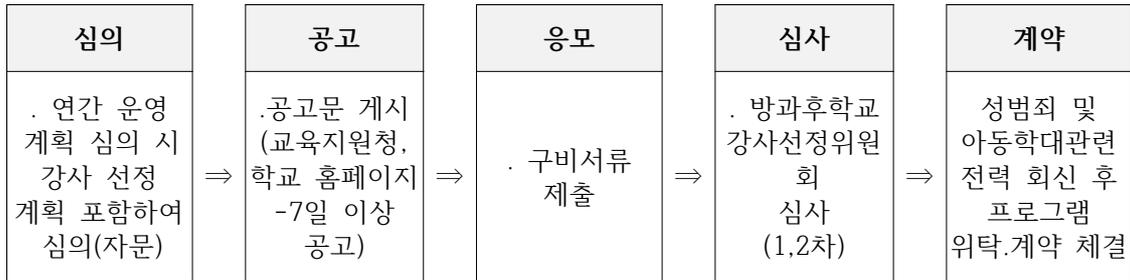
### 가. 개인위탁 강사 모집

- 1) 강사 선정 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학교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모집한다.

- 2) 강사와 프로그램 위탁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3) 외부강사 선정 및 위탁계약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받고, 취업 제한 사유에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한다.

#### 나. 계약 절차

- 1) 제안서와 운영능력심사를 통해 선정된 강사는 학교장과 계약한다.
- 2) 강사 계약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다. 계약 해지

- 자동 해지 : 계약 기간이 만료될 시
- 학교장에 의한 해지
  -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 기타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 되었을 때
- 강사 해지 :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할 시
  - 다만, 외부강사가 개인사정에 의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할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는 외부강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라. 현직교원의 경우 : 방과후학교 운영계획(내부결재)으로 갈음함.

## 6. 개인 선정 심사 계획

### 가. 심사위원 구성

- 1) 제안서 제출자에 대한 심사위원은 3명으로 한다.
- 2) 심사위원은 제출 받은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와 면접 등을 통하여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청렴 및 보안 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서약서를 제출한다.

나. 강사선정위원 자격

심사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한다. 단, 외부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외에 전문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 세부 계획

1) 개인위탁 심사 절차

순	절차	일 정	비 고
1	공고 및 응모	20○○.○○.○○.( ) ~ 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홈페이지</li> <li>■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li> <li>■ 접수방법 :</li> </ul>
2	제안서심사	20○○.○○.○○.( )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 강사선정위원회</li> <li>■ 1차 제안서 평가 결과 개별통보</li> </ul>
3	운영능력 심사	20○○.○○.○○.( )09:00 ~ 20○○.○○.○○.(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소 :</li> </ul>
4	심사결과 발표	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격자 발표</li> <li>■ ○○학교 홈페이지에 발표</li> <li>■ 개별 통지</li> </ul>

2) 개인위탁 심사 기준

- 2. 개인위탁 참조

7. 회계 관리

가. 회계 관리 및 운영

- 1) 수강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로 구성된다.
- 2)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별(차시별)로 수납한다.
- 3) 학교 회계 절차에 의해 수익자 부담으로 도서 또는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는 세부 운영 계획 심의를 받는다.
- 4) 방과후학교 강사는 평일 하루 2시간, 방학 중 4시간 이상의 수업을 할 수 없다.
- 5) “2019학년도 전북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지침”에 의거 내부 강사는 시간당 30,000원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고, 방학중방과후학교 운영에서도 하루 12만원 이상을 지급할 수 없다.  
(단, 외부강사의 강사료는 1시간당 32,000이고 거리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자유수강권 지원

1) 지원 목적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2) 지원 방법

-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자유수강권 지급

3) 지원 대상 및 순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자녀,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2순위 : 소득에 따른 지원, 중위소득 60%(최저생계비 150%) 범위에 속하는 자
  - ※ 차상위복지급여대상자(차상위자활급여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대상자) 포함
- 3순위 : 학교장 추천(다자녀, 다문화 포함)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및 조손가정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1순위와 2순위 중 방과 후 참여 대상자의 10% 이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4) 학교장 추천 및 다자녀 추천 시 공정성 강화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5)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6) 자유수강권 지원 방식

- 학부모가 읍면동(또는 온라인)에 신청→행복e음을 통해 조사 및 초기결정→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7) 사용 범위

- 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학생의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수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나) 지원대상 학생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수강료(강사료, 수용비),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 활동 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등에 지원 할 수 있다.

다.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구 분	환 불 사 유 발 생 일	환 불 금 액	비 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않음	

- ※ 1.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 2.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8. 학생 관리

- 가. (출결관리) 학부모에게 지각, 결석 상황을 안내하고 출석을 독려한다.
- 나. (생활지도) 프로그램 참여태도, 생활태도, 위생 및 건강관리, 시설물 보호 등에 힘쓴다.
- 다. (안전지도) 안전지도 및 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1) 교내 안전 지도 및 안전 귀가 지도를 실시한다.
  - 2) 방과후학교 운영 교실을 집중 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CCTV나 방화차단막 등을 활용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한다.
- 라.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 다만,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법률에 의무보험가입 규정이 있는 경우 포함)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신청한다.
- ※ 외부위탁업체와 계약 시에는 업체의 고의·과실의 경우, 보상청구 가능하도록 민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 후 계약

마. 학교장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장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학교외부에서 교사 등의 입장 없이 외부위탁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

## 9. 홍보

가. (홍보방법)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 1) 학교 홈페이지에 방과후학교 코너를 개설한다.
- 2) 학교 소식지,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SMS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

나. (홍보내용) 프로그램 운영 내용 및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1) 부서별 연간 또는 기별 학습 계획 및 준비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2) 운영사례 및 운영 프로그램을 홍보한다.
- 3)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안내한다.

다. 나이스 방과후학교 개편시스템 적극 활용하여 업무 절차의 표준화 및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을 도모하고,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한다.

## 10. 평가

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공개 등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프로그램 질 개선에 활용한다.

나.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한다.

다. 학부모 모니터링을 활용하여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한다.

평가 분야	평가 내용	횟수	평가자	비고
만족도 조사	○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조사 -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에 대한 만족도 - 강사 만족도(프로그램 운영 방법, 내용의 충실성, 전문성 등)	학기별 1회	학생 학부모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활용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조사	학기별 1회	학생 학부모 교사	
자체 점검·평가	○ 계획수립, 운영개선, 예산확보 및 예산집행, 강사모집, 학습 계획 등	학년말 1회	교사	

## 11. 기대 효과

가. 다양한 프로그램(교과, 교양, 특기적성강좌) 운영으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

나. 학생의 잠재적 소질 적성 개발 및 보충 심화 교육의 기회 제공

다.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부모 만족도 향상과 학력신장

라. 여러 교육활동을 통한 바른 인성 교육의 장 마련

마. 학습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수강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격차를 완화

바. 지자체, 대학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강화

12.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월별로 변경할 수 있음)

가. 1,2,3학년 교과학습 과목 및 담당교사

과 목	교실	1-1	2-1	3-1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반	1반	1반
국 어		김*자	김*자	안*자
영 어		허 *	허 *	김*한
수 학		배*애	배*애	김*수

나. 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시간표(차시별 변경할 수 있음.)

학년	시간	월	화	목
1	8교시 (16:10-17:00)	국 어	영 어	수 학
2	8교시 (16:10-17:00)	수 학	국 어	영 어
3	8교시 (16:10-17:00)	영 어	수 학	국 어